

인천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2가단2024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1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2. 18. 체결된 증여예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. 2. 20. 접수 제59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이슬

별지